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令』 研究*

김 광 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正祖의 『臨軒功令』 편찬 의도와
목적
- III. 『臨軒功令』의 체제와 내용
- IV. 『臨軒功令』의 의의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R1923541), 2020년 동양고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조선 正祖 연간부터 편찬이 이루어진 科文集 『臨軒功令』에 대한 文獻學的 고찰을 통해 그 체제와 내용 및 특징 등을 기초적 차원에서 탐색한 것이다.

正祖는 즉위 때부터 과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개혁을 시도한 바 있었으며, 과거 문제와 답안 자료가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그가 즉위 초부터 각종 科擧 및 課製의 문제와 답안을 수집하여 科文集인 『臨軒功令』을 편찬하도록 지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조의 뜻에 따라 이 책은 정조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과거 시대의 마지막인 高宗代까지 편찬이 계속되었다.

『임헌공령』은 정조 연간 이후 과거 시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책에는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각종 시험의 시행일, 문제, 답안, 해당 답안의 작성자 및 성적 등 관련 자료를 정조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해당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들을 선별하여 누락 없이 전문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향후 『임헌공령』을 다각도로 활용한다면 과거 시행 및 문제 출제와 답안의 양상 등 과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正祖, 臨軒功令, 常目總攬, 科擧, 科文, 時文, 科文集, 文獻學.

I. 머리말

科擧는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줄곧 시행되었던 인재 선발 제도이다. 과거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오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도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과거 폐지를 주장한 인사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도는 단 한 차례도 폐기된 적 없이 강한 생명력으로 조선의 인재 선발을 책임져 왔다. 과거 제도는 단순히 글재주나 경전에 대한 지식만을 척도로 사람을 뽑았던 제도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시행에는 그 시대의 국가 시책을 비롯하여 그 시대의 사상, 문화, 사회 등 제반 분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조선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과거 제도에 대해 그간 지나치게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과거 연구는 주로 사학 분야에서 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문학 분야에서는 극히 일부의 연구자들에 의해 힘겹게 관심이 이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과거의 내용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문제와 답안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련 연구 성과가 영성했던 것이 현실이다.¹⁾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正祖(1752-1800)가 제안하여 처음 만들어지고 이후 정조의 뜻에 따라 高宗代까지 지속적으로 자료가 추가되었던 과문집 『臨軒功令』에 대해 기초적 탐

1) 다행히 최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과거 문제 및 문체, 답안 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관심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호, 진단학회, 2016 ; 윤선영, 「조선시대 課試의 四書疑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임헌공령』은 규장각에 零本 74책, 국립도서관에 영본 28책²⁾이 수록되어 있는 巨帙의 科文集으로, 正祖代부터 高宗代까지의 大小科 및 기타 과거, 文臣 課製 등의 자료가 문제, 시험 정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 후기 과거 제도와 科文을 연구할 때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헌공령』에 주목했던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³⁾ 이 자료 자체에 주목한 본격적인 탐색 작업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임헌공령』을 문헌학적으로 고찰하여 그 체제와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조의 『임헌공령』 편찬 의도와 그 자료적 가치 등도 고찰해볼 것이다.

II. 正祖의 『臨軒功令』 편찬 의도와 목적

조선시대 군주치고 인재 선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없겠지만 정조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였다. 예컨대 그는 즉위 이후 英祖의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서 곧바로 과거 제도의 개혁을 위해 명을 내려 大小 臣僚들의 의견을 구한 적도 있었다.⁴⁾ 이를 통해 보면 그는 이미 世孫 시절

2) 국립중앙도서관에는 4권본과 24권본 두 종의 『임헌공령』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3) 『임헌공령』을 자료로 활용한 연구 성과가 몇 건 존재한다.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윤선영, 「순조·철종대 과거 사서의 시제 출제경향 연구」, 『규장각』 5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 「조선시대 과거 사서의 試文 일고」, 『한문학논집』 50집, 근역한문학회, 2018 ; 윤선영, 「조선시대 課試의 四書疑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등. 이중 박현순의 논문은 御題 모음집인 『임헌제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헌공령』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4) 이때 내려진 綸音이 『정조실록』에 수록되어 전한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28일 기사 참조. 1,500여 자에 이르는 장편의 운음에서 그는 과거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부터 과거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개혁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비록 여러 한계로 인해 그의 과거 제도 개혁의 꿈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지만⁵⁾ 이후로도 그는 과거 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대한 정조의 관심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臨軒功令』이다. 현전하는 『임헌공령』에는 서문이나 발문 등이 전혀 없어 이 책의 편찬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정조 연간에 편찬된 도서 해제집인 『群書標記』에 이 책이 著錄되어 있어서 이 책의 편찬 의도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정조가 직접 작성한 이 책의 해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功令文의 각 문체 중에서 우수한 여러 試券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기록한 것은 親臨한 시험에서의 시권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禮曹에서 거두어들인 것, 成均館에서 거두어들인 것, 여러 道의 都會(公都會)에서 지은 것 등에게까지 이르러 모아 취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럼에도 ‘臨軒’이라고 한 것은 것은 임금이 직접 평가한 것이 試官이 평가한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科擧의 폐단이 오래되었다. 내가 즉위한 초기에 우선 綸旨를 반포하고 널리 조정의 논의를 물었는데, 비록 옛날과 지금은 마땅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바꾸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봄과 가을의 到記科에서 옛 법을 천명하고, 성균관 유생들의 課試에서 성대한 일을 追述하며, 文臣 講製에서 湖堂(讀書堂)의 아름다운 규범을 본받는 따위는 대체로 오늘날 공령문을 통해 옛사람이 인재를 변별하는 뜻을 부치려 한 것이었다. 그래서 體裁는 반드시 玄酒와 大羹을 이야기하였고, 音韻은 반드시 朱絃과 疏越을 이야기하였고, 步趨는 반드시 ‘範我驅馳’를 이야기하였으며, 命題는 한 가지 문체만으로 하지 않았고 考課는 추위와 더위에도 틈을 두지 않았으니, 적이 朱夫子께서 “풍속이 이로써 융성해지고 나라는 이로써 다스려지니 과거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바란 것이다. 이 책의 여러 작품들은 비록 그 아름다움과 허물을 가릴 수 없고 장점과 단점이 서로 드러나 있으나 잘

취지를 논술하였다.

- 5) 이에 대해 『정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같은 책, “諸臣獻議多參差. 上自初元, 必欲痛革科弊, 而難於更張, 竟未果.”

관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취사하고 감별한 큰 뜻을 알 것이다.

처음에는 春曹(禮曹) 하여금 편찬해 바치게 하였다가 근래에는 內閣(奎章閣)에서 베끼고 교정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 매번 고시를 하고 나서 편차하고 기록하여 종류별로 모으고 각기 문체별로 순서를 매기고 줄곧 시간 순서를 따라 丙申年(1776, 정조 즉위)부터 庚申年(1800, 정조 24)까지 책으로 만든 것이 156권이다. 지금부터는 일을 계승하여 더 편찬한다면 장차 몇천 권이 될지 모를 일이니, 또한 時文의 큰 보고일 것이다.⁶⁾

위 인용문을 보면 정조가 과거 문제와 답안을 통해 자신의 시대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조가 인용한 주자의 발언인데, 이는 사실 唐 柳宗元이 「送崔子符罷舉詩序」⁷⁾에서 한 말이다. 이 글은 과거를 포기하고 떠나려는 崔策이라는 인물에게 유종원이 시를 지어주고 그에 대한 서문으로 쓴 것이다. 해당 문장의 구체적 의미는 과거 제도가 일정한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본모습을 글을 통해 보여준다는 본질 자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글과 행동을 살펴서 남을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높이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추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니 과거 제도를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⁸⁾ 결국 과거 문제와 답안을 통해 그 시대

6) 정조, 『弘齋全書』 권184, <臨軒功令一百五十六卷>, 『群書標記』 6, 한국문집총간 267, 584-585면, “此功令各體得雋諸券之哀錄者也. 所錄不專止臨試之券而已, 下逮禮闈所收, 陸庠所取, 諸道都會之作, 無不彙攬, 而謂之臨軒, 以御考之多於試考也. 科舉之弊久矣. 予於踐阼之初, 首先頒綸, 博詢在廷之議, 雖以古今異宜, 未能大加更張, 而如春秋到記之修明舊典, 泮儒課試之追述盛事, 文臣講製之倣用湖堂美規, 蓋欲因今日功令之文, 寓古人辨材之義. 而體裁則必曰玄酒大羹, 音韻則必曰朱紘疏越, 步趨則必曰範我驅馳, 命題不專於一體, 考課靡間於寒暑, 竊有斬乎朱夫子所謂俗以其隆, 國以其理, 而科不俟易者, 卽此卷中諸作, 雖其瑕瑜不掩, 長短互見, 而善觀者尙可以知予取捨鑑別之大意矣. 始令春曹編進, 近使內閣專管寫校, 每過考試, 隨加編錄彙類, 各以文體序次, 一從年月, 自丙申至庚申爲卷者一百五十六. 由茲以往, 踵事添修, 將不知幾千百卷, 亦可謂時文之一大淵府也.”

7) 유종원, 『柳河東集』 권23에 수록.

8) 유종원, 『유하동집』 권23, <送崔子符罷舉詩序>, 四庫全書本, “卽其辭, 觀其

를 올바르게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이 유종원의 생각이었고 정조는 그러한 생각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인용문 마지막에서 『임헌공령』을 두고 정조가 “時文의 큰 보고”라고 自評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문’이란 바로 ‘科文’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이 역대의 과문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과거 문제에는 임금의 생각⁹⁾과 국가 시책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답안인 과문에도 역시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조는 자신의 국가 시책이 반영된 과거 문제와, 이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응답인 과거 답안을 수집함으로써 자신이 통치한 시대의 명암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문장을 통해서 시대와 인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전통적이면서 소박한 사상이 『임헌공령』 편찬의 동기로 작용했으며, 과거 문제와 답안에 대한 정조의 이같은 생각은 오늘날 과거 문제와 답안을 연구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편찬 의도와 더불어 이 책의 편찬 시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한다. 애초에 지속적으로 증보가 이루어지는 이 책의 성격 상 편찬 시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조가 언제부터 이런 성격의 책을 편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실현시켜 나아갔는지, 그 최초 편찬 시기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行, 考其智, 以爲可化人及物者隆之, 文勝行無觀智無考者下之. 俗其以厚, 國其以理, 科不俟易也.”

- 9) 물론 과거 문제는 임금이 직접 출제하는 경우보다는 해당 시험의 試官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관들도 기본적으로는 임금의 생각과 국가 시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과거 문제에는 임금의 의도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영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 상에 『임헌공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奎章閣의 일지인 『內閣日曆』 1781년(정조 5) 5월 16일 기사이다. 당시 直提學이던 沈念祖가 『임헌공령』과 1781년 1월의 『內閣日記』(『내각일력』을 가리키는 듯함)의 中草本을 들인다는 보고를 올린 것¹⁰⁾이 그 내용인데, 이를 통해 이미 정조 초년부터 『임헌공령』의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편찬 개시 시기는 관련 자료의 미비로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 정조가 즉위 직후부터 과거 제도의 개혁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점 등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정조는 이미 즉위할 때부터 과시문 자료 集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임헌공령』과 같은 책의 편찬을 생각하고 있었다 추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임헌공령』의 편찬 체제와 내용

1. 편찬 체제와 방법

『임헌공령』에는 정조대로부터 고종대까지 각종 과거 및 문신에게 부과된 다양한 제술 시험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내용을 증보하도록 정조가 명하였기 때문에 구성상으로는 일정한 체계를 찾기 어려우나, 본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관된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常目總覽』에는 『임헌공령』 편찬을 위한 범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¹¹⁾ 여기에는 문체별 범례와 더불어 제목 아래의 주석에 시험 및 답안 작성자 정보가 어떤

10) 『내각일력』 11책, 1781년(정조 5) 5월 16일 기사, 규장각 소장본(奎13030), “沈念祖以領籤口傳啓曰: ‘臨軒功令及辛丑正月本閣日記中草入啓之意, 敢啓.’”

11) 이 범례는 1794년(정조 18)에 개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정조 초년에 『임헌공령』의 편찬을 개시하면서 마련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형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시험별로 정리되어 있다.¹²⁾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殿策은 모두 뽑힌 수에 따라 연이어 쓰는데 두 번째 이하로는 極行(글의 줄에서 맨 위 - 인용자)에 ‘同題’라 쓰고 그 아래에 직함과 성명, 성적을 적는다. 무릇 원 제목은 극항에 쓰고 年月, 시험명 및 직함, 성명, 성적은 별행에 2글자를 낮추어 小註 두 줄로 쓴다. 원문은 다시 별행에 한 글자를 낮추어 쓴다. 卷首에는 ‘臨軒策問’ 네 글자를 쓴다.

執策은 1등을 한 작품만 쓰되 제목은 한 글자를 낮추어 쓴다. 시험명 및 직함, 성명, 성적은 전책의 범례에 의해 쓴다. 원문은 극항에 쓴다. 다른 제목의 1등 작품은 다른 장에 처음 쓴다. 권수에는 ‘執策’ 두 글자를 쓴다.

律詩는 印札(선을 그어 칸을 만든 것 - 인용자) 없이 극항에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 한 줄로 한가운데에 몇언인지와 그 운율을 쓴다. 그 아래에 두 줄로 연월, 시험명, 직함, 성명, 성적을 쓴다. 두 번째 이하부터는 극항에 ‘同題’라고 쓰고 그 아래에 단행으로 직함과 성명, 성적을 쓴다.

表, 賦, 箴, 銘, 頌은 모두 인찰 없이 한쪽 면마다 한 편씩 쓴다. 제목과 주석은 모두 율시의 예를 따르며 科體詩 역시 같다.

賦, 表, 箴, 頌, 銘, 律詩, 科體詩는 한 권을 채우면 卷中の 제목을 베껴내되 青花로 空隔紙에 나열하여 쓴다. 入格한 사람이 비록 많더라도 작은 글씨로 제목 아래마다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합하여 쓴다. 그 아래에 연월과 시험명을 쓴다.

論, 辯, 議, 記, 序는 집책의 예에 따라 (칸을) 높이고 낮추되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연월과 직함, 성명을 쓴다. 청화로 작게 제목을 쓰는 것은 또한 부, 표, 잠, 송, 명, 율시의 예에 따라 한다.

殿策에서 소제목은 나열해 쓰는 것은 위와 같은데, 먼저 ‘策’자를 쓰고 다른 행에 ‘책’자보다 조금 낮추어 제목을 나열해 쓴다.¹³⁾

12) 이를테면 親試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식은 다음과 같다. 『상목총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122-2), “某年某月朔抄啓文臣親試 職卿臣某某等”

13) 같은 책, “殿策, 則一從被抄數連書, 而自第二以下, 則極行書同題, 其下書職姓

위의 기록을 살펴 보면, 문제별로 어떤 형식으로 문제와 답안 자료를 기록하는지, 어느 수준까지의 정보를 함께 수록하는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임헌공령』 중에서 비교적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殿策을 수록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4책본 『임헌공령』(古貴 3647-5) 중 11책을 통해 범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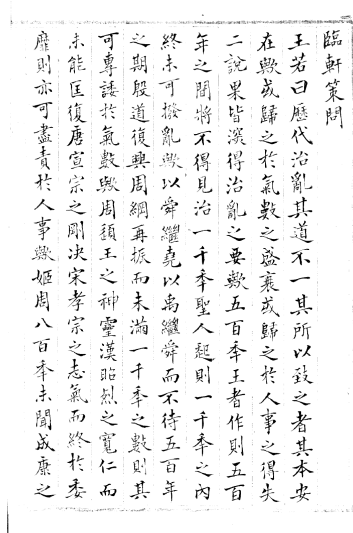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헌공령』 11책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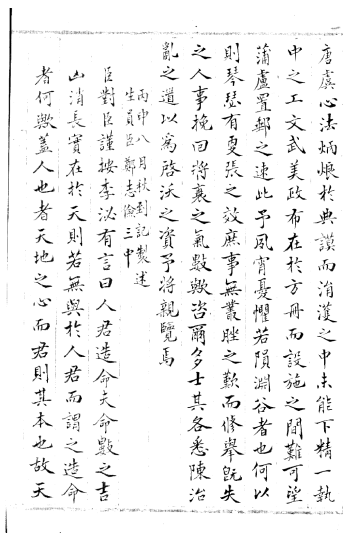


그림 2 같은 책 5면

名等第。凡原題則極行書之，年月科名及職臣姓名等第，別行低二字以小註雙書。原文又別行低一字書之。卷首書臨軒策問四字。

執筆，則只魁作書之，而題則低一字書之。科名及職姓名等第，則一依殿策凡例書之。原文，極行書之。他題魁作，則以別張始書。卷首則書執筆二字。

律詩，無印札，極行書題，其下以小字單行正中書某言其韻律，其下雙行書年月科名職姓名等第。自第二以下，極行書同題，其下行書職姓名等第。

表賦箴銘頌，並無印札，每片面書一篇。題與懸註，凡例倣律詩，科體詩亦同。

賦表箴頌銘律詩科體詩，滿一卷，則抄出卷中之題，以青花列書空格隔紙，而入格雖多數，以小字每題下合書幾數。其下書年月科名。

論辯議記序，依執筆例高低，而題下以小字書年月職姓名。青花小題目，亦倣賦表箴頌銘律詩例爲之。

殿策則小題目列書衣〔依〕上，而先書策字，他行比策字小低，列書題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임헌공령』 11책에는 1776년(정조 즉위) 가을 到記科부터 이듬해 4월 增廣文科 殿試에 이르기까지의 전책 문제와 작품이 총 6제 5편(문제 2건에 대해서는 답안이 수록되지 않음) 수록되어 있다. 卷首 부분에는 규정대로 ‘臨軒責問’ 네 글자가 적혀 있고, 바로 이어서 極行부터 御題策問이 수록되었다. 『임헌공령』에서는 전책과 執策의 기록 양식이 서로 다른데, 전책은 임금이 직접 주관하여 출제하므로 문제를 극항에, 답안을 한 글자 내려 쓰는 반면, 집책은 문제를 한 글자 내려 쓰고 답안을 극항에 쓰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범례에 따르면 시험 관련 정보는 문제 끝에 행을 달리 하여 적으며, 이때 기록되는 정보는 연월, 시험명 및 직함, 성명, 성적이다. 위 그림을 보면 해당 시험은 1776년(정조 즉위) 8월에 치러진 가을 到記科 製述 시험이었고, ‘治亂’을 주제로 정조가 직접 출제한 문제였다. 답안 작성자는 당시 生員이었던 鄭志儉(1737-1784)¹⁴⁾, 성적은 三中을 받았다는 사실이 작은 글씨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 범례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 관련 정보를 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답안 본문 역시 범례에 충실하게 한 칸을 내려서 기록하였다. 어떤 문제가 언제 출제되었고 누가 답안을 작성했는가가 과거 문제 및 답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시험 및 응시자 정보가 빠짐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임헌공령』의 자료적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책에 수록된 과거 관련 자료들은 기존의 방목이나 역사기록(『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는 실리지 않은 것들이 많으므로 여기에 附記된 시험 및 응시

14) 정지검은 해당 시험에서 居首하여 直赴殿試의 혜택을 받고 같은 해 10월 2일에 치러진 庭試文科 殿試에서 丙科 1위로 최종 합격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도기과는 8월 26일에 치러져 그날 出榜하였는데, 바로 다음날 정조가 정지검만을 대상으로 다시 ‘文武’ 주제의 책문을 시험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조는 정지검에게 재주를 남김없이 펼쳐낼 기회를 주고자 그를 다시 시험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정지검의 대책문에 크게 만족하며 그에게 지필묵을 하사하였다. 『日省錄』 정조 즉위년 8월 26일, 27일 기사 참조.

자 정보는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科體詩의 형식(7言 18句)이 아닌 경우에는 제목 아래 小字로 형식을 명기하였는데, 이 역시 『상목총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임헌공령』에는 시를 수록할 때 그 형식을 과체시와 律詩 두 종류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던 바, 율시의 경우는 해당 작품이 몇言이며 몇 韻의 율시인지를 명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조는 『상목총람』에 실려 있는 일반적 차원의 범례 외에도, 『임헌공령』의 편찬 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편찬 규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1782년(정조 6) 6월 16일에 정조는 아래와 같은 傳敎를 내린다.

『임헌공령』을 修整할 때, 이후로는 초계문신 제술에서 혹 다시 시험을 보였다면 제목 아래에 다시 시험을 보인 이유를 적고, 陞補學製의 試券에는 제목 아래에 시험관의 성명을 적어 들이라. 이를 규정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禮曹에 분부하라.¹⁵⁾

정조는 재위 기간 내내 『임헌공령』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편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 인물들을 엄하게 질책하였고, 위 인용문에서처럼 편찬 체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실제 『임헌공령』 편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정조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임헌공령』은 편찬의 동력을 잃지 않고 정조 사후에도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헌공령』의 편찬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와 관련하여 『상목총람』에는 날짜별로 『임헌공령』 내용의 修整 내역을 정리한 <臨軒功令小本修入錄>이 있어 관련 정황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록은 일종의 『임헌공령』 편찬 일지이자 진도표로서, 일자별로

15) 『內閣日曆』 25책, 정조 6년 6월 16일 기사, 규장각 소장본, “口傳下敎曰: ‘臨軒功令修整時, 此後則抄啓文臣製述, 若或更試, 題下懸以更試之由. 陞補學製試券, 則題下懸考官姓名以入. 因爲法例之意, 分付禮曹.’”

『임헌공령』내용의 추가 내역, 기타 특이사항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일별해 보면 언제 어느 문제의 몇 책에 대해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는지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헌공령』 편찬은 특정 주기에 관련 자료를 한꺼번에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을 치를 때마다 일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시험의 관련 자료를 그때그때 수합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787년(정조 11) 7월 18일의 자료 추가 내역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정미년 7월 18일

表 : 제8권 다 채우지 못함. [정미년 7월 아무 날 七夕製의 <擬漢群臣賀山東出桐> 운운한箋에서 그침]

律詩 : 제3권 다 채우지 못함. [정미년 7월 아무 날 親試의 율시 <神仙之說誠荒唐>에서 그침]

표 제8권이 가득 차 소목록을 적어 수정해 들었음.¹⁶⁾

이 기록에 따르면 7월 18일에 표와 율시의 문제 및 답안 자료를 기존의 『임헌공령』 자료에 추가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다른 자료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율시 문제인 <神仙之說誠荒唐>에 대해 잠깐 살펴 보면, 해당 문제는 7월 10일에 치러졌던 抄啓文臣 親試에서 정조가 직접 출제한 문제로, 20운의 排律을 다음날 申時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11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해당 시험에서는 副司果 李書九를 비롯한 6명이 三下 이상의 성적을 받았던 바, 이 6명의 답안 전체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헌공령』 2책에 수록되었다.¹⁷⁾ 『상목총람』의 기록을 통해

16) 『상목총람』, <臨軒功令小本修入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丁未七月十八日 : 表第八卷未滿. [丁未七月日七夕製, 擬漢群臣賀山東出桐云云箋止.] 律詩第三卷未滿. [丁未七月日親試, 律詩神仙之說誠荒唐止.] 表第八卷已滿, 書小目錄修入.”

17) 7월 10일 친시에 대한 내용은 『내각일력』 88책, 정조 11년 7월 10일 및 11일 기사 참조.

우리는 이 내용이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1주일만에 『임헌공령』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臨軒功令小本修入錄>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늦어도 시험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는 해당 시험 관련 자료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로 갈수록 자료의 추가 작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조는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며 작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備忘記로 尹行恉에게 전교하기를, “근래에 『임헌공령』 책자의 수정과 入啓가 매번 기한을 어겨 定式을 해조에 내려 거행하니 매우 놀랍다. 지금부터는 出榜 후 3일이 지나도 써 들이지 않으면 해당 郎廳을 곧바로 잡아들이라는 뜻을 받들도록 하고, 申飭하지 않은 閣臣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¹⁸⁾

위 인용문은 1783년(정조 7) 7월 8일에 내려진 정조의 전교로, 『임헌공령』 편찬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출방 후 3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편찬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이 그 골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조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계속 지지부진하여 불과 3개월여가 지난 10월 19일에 다시 같은 내용의 전교를 내리기에 이른다.¹⁹⁾ 그나마 이와 같은 정조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대의 『임헌공령』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가 보존된 반면, 순조대 이후의 자료는 정조대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18) 『내각일력』 38책, 정조 7년 7월 8일 기사, 규장각 소장본, “以備忘記傳于尹行任〔恉〕曰：‘近來臨軒功令冊子修整入啓，每致愆期，定式之下該曹舉行，極爲駭然。自今出榜後，過三日不爲書入，該色郎廳，直捧拿處傳旨，不飭之閣臣，責亦難免，以此知悉。’”

19) 『내각일력』 54책, 정조 7년 10월 19일 기사, 규장각 소장본, “以備忘記傳于李崑秀曰：‘臨軒功令限內不得修整，則禮郎拿處事，曾有特教定式。而近來小本入啓，每值遲滯，而自本閣亦無察推之事。後復如此，當該禮郎，當各別重勘，不飭之閣臣，亦難免罪責。以此知悉，惕念舉行。’”

2. 수록 내용 개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기 위해 수록된 작품들의 수량을 책별로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책수	문체	내용	비고
1	策	1777(정조 1) 2월 增廣文科 初試 / 執策 9제 9편	
2	策/賦	1782(정조 6) 1월 到記科~1783(정조 7) 1월 到記科 / 執策 4제 15편, 賦 1제 1편(四學儒生應製) / 총 5제 16편	
3	賦	1783(정조 7) 1월 到記科~1785년(정조 9) 4월 抄啓文臣課試 / 賦 84제 151편	
4	表/箋/詔/敎	1785(정조 9) 齋生應製~1786년(정조 10) 9월 抄啓文臣親試 / 表 21제 77편, 箋 7제 37편, 詔 2제 10편, 敎 1제 15편 / 총 31제 139편	
5	頌/銘/贊/箴/碑	1785년(정조 9) 參班儒生應製~1798(정조 22) 9월 文臣製述 / 頌 12제 42편, 銘 37제 81편, 贊 6제 20편, 箴 2제 4편, 碑 1제 2편 / 총 58제 149편	
6	策	1788년(정조 12) 9월 己酉式年文科 初試 / 執策 11제 11편	
7	策	1789(정조 13) 1월 抄啓文臣課試~1790(정조 14) 8월 增廣文科 初試 / 執策 7제 11편	
8	賦	1790(정조 14) 2월 人日製~동년 8월 水原儒生應製 / 賦 16제 112편	
9	表/箋	1790(정조 14) 3월 抄啓文臣更試~동년 8월 增廣文科 初試 / 表 24제 63편, 箋 7제 29편 / 총 31제 92편	
10	詩	1790(정조 14) 8월 增廣監試 초시~1791(정조 15) 9월 水原儒生應製 / 詩 99제 110수	
11	策	1790(정조 14) 8월 增廣文科 初試 / 執策 8제 8편	
12	策	1790(정조 14) 10월 抄啓文臣 課試 및 上齋儒生應製 / 殿策 1제 9편	
13	詩	1794(정조 18) 10월 抄啓文臣 應製 및 泮儒 應製~1796(정조 20) 4월 中學製 / 詩 117제 132수	
14	策	1794(정조 18) 9월 式年文科 初試~1795(정조 19) 11월 抄啓文臣 課試 / 執策 11제 14편	

15	書/通文/判/啓目	1795(정조 19) 11월 抄啓文臣 課試 / 書 1제 1편, 通文 1제 1편, 判 1제 1편, 啓目 1제 2편 / 총 4제 5편	
16	賦	1796(정조 20) 1월 人日製~동년 12월 開城府 公都會賦 85제 119편	
17	義	1797(정조 21) 5월 北關功令生應製~1798(정조 22)2월 監試會 / 詩義 3제 3편, 禮義 1제 1편 / 총 4제 4편	
18	詩	1797(정조 21) 9월 慶尙左道 公都會~동년 12월 全羅左道 式年文科 初試 / 詩 63제 66수	
19	缺		
	詩	1811(순조 11) 윤3월 四學齋任應製~1816(순조 16) 開城府 陞補試 (마지막 작품만 1796(정조 20) 5월 皇壇望拜禮 參班儒生應製) / 詩 346제 356수	책수 불분명
20	疑	1813(순조 13) 8월 增廣監試 初試~1816(순조 16) 10월 式年文科 會試 / 疑 36제 36편	
21	策	1813(순조 13) 9월 增廣文科 初試~동 시험 覆試 / 執策 15제 16편	
22	義	1814년(순조 14) 윤2월 式年監試 初試~1822년(순조 22) 3월 式年監試 覆試 / 易義 8제 8편, 禮義 12제 12편, 書義 14제 14편, 詩義 13제 14편 / 총 47제 48편	
23	義/疑/策/論/銘/表	1815년(순조 15) 9월 忠淸道 公都會~동년 9월 全羅道 東堂初試 / 禮義 4제 5편, 詩義 9제 9편, 書義 2제 3편, 易義 1제 1편, 疑 19제 23편, 策 4제 6편, 論 3제 3편, 銘 1제 1편, 表 14제 19편 / 총 57제 70편	
24	賦	1817(순조 17) 1월 人日製~동년 12월 京畿 公都會 / 賦 60제 61편	
25	詩	1817년(순조 17) 9월 陞補試 初抄~동년 12월 京畿 公都會 覆試 / 詩 51제 51편	
26	疑	1818년(순조 18) 8월 式年監試 初試~1822년(순조 22) 윤3월 式年監試 覆試 / 疑 28제 28편	
27	策	1818(순조 18) 式年文科 初試~1822(순조 22) 윤3월 忠淸左道 式年文科 初試 / 執策 12제 12편	
28	銘/頌/詔	1824(순조 24) 6월 翰林召試~1827(순조 27) 윤5월 入直 文蔭官 應製 / 銘 7제 16편, 頌 4제 13편, 詔 1제 1편 / 총 12제 30편	
29	策	1824(순조 24) 9월 文科 初試~1826(순조 26) 2월 別試 文科 初試 / 執策 10제 10편	

30	論/序/疏 /草記/判	1827(순조 27) 7월 入直承史閣臣等 應製~동년 11월 武臣應製 / 論 2제 7편, 序 1제 7편, 疏 1제 2편, 草記 1제 5편, 判 1제 1편 / 총 6제 22편	
31	詩	1827(순조 27) 5월 禁直文蔭官 應製~1827(순조 27) 11월 承史閣臣 應製 / 詩 21제 105수	
32	賦/詩/表 /箋/頌	1827(순조 27) 2월 春到記~동년 11월 黃柑製 / 賦 3제 3편, 詩 2제 5편, 表 5제 6편, 箋 1제 1편, 頌 3제 6편 / 총 14제 21편	
33	賦	1831(순조 31) 1월 人日製~1832(순조 32) 12월 學製 / 賦 137제 156편	
34	賦	1833(순조 33) 1월 人日製~동년 12월 開城府 陞補試 / 賦 60제 68편	
35	表/箋/頌	1835(헌종 1) 7월 秋到記~1840(헌종 6) 3월 式年文科會試 / 表 35제 36편, 箋 6제 6편, 頌 1제 1편 / 총 42제 43편	
36	銘/頌	1835(헌종 1) 10월 增廣文科 殿試~1838(헌종 4) 6월 翰林 召試 / 銘 4제 13편, 頌 1제 4편 / 총 5제 17편	
37	論	1836(헌종 2) 9월 平安北道 式年文科 初試~1838(헌종 4) 8월 慶尙左道 增廣 初試 / 論 4제 4편	
38	詩	1835(헌종 1) 12월 檢書官 取才~1840(헌종 6) 3월 參班儒生 應製 / 詩 4제 6수	
39	賦	1840(헌종 6) 1월 人日製~동년 12월 黃柑製 / 賦 72제 80편	
40	表	1841(헌종 7) 3월 三日製~동년 12월 黃柑製 / 表 4제 4편	
41	表/箋	1841(헌종 7) 윤3월 三日製~1845(헌종 11) 2월 庭試文科 初試 / 表 31제 31편, 箋 4제 4편 / 총 35제 35편	
42	論	1782(정조 6) 文臣 製述~1787(정조 11) 抄啓文臣 課試 / 論 20제 38편	
43	銘	1842(헌종 8) 日次儒生 殿講比較 / 銘 1제 1편	
44	義	1842(헌종 8) 式年監試 初試~1845(헌종 11) 平安北道 式年監試 初試 / 詩義 9제 9편, 書義 9제 9편, 禮義 16제 16편, 易義 3제 3편 / 총 37제 37편	
45	論	1844(헌종 10) 2월 全羅左道 增廣文科 初試~동 咸鏡南道 初試 / 論 2제 2편	

46	銘	1847(헌종 13) 12월 翰林 召試 / 銘 1제 3편	
47	義	1848(헌종 14) 增廣監試 初試~1850(철종 1) 4월 增廣監試 覆試 / 詩義 15제 15편, 書義 14제 14편, 禮義 18제 20편, 易義 1제 1편 / 총 48제 50편	
48	表/箋	1848(헌종 14) 增廣文科 初試~1850(철종 1) 4월 增廣文科 覆試 / 表 39제 39편, 箋 4제 4편 / 총 43제 43편	
49	銘	1848(헌종 14) 增廣文科 殿試~1850(철종 1) 4월 增廣文科 殿試 / 銘 4제 13편	
50	論	1848(헌종 14) 黃海道 增廣文科 初試~1849(철종 즉위) 12월 檢書官 取才 / 論 3제 3편	
51	銘/詩	1848(헌종 14) 增廣文科 殿試~1849(철종 즉위) 12월 檢書官 取才 / 銘 4제 13편, 詩 2제 6수 / 총 6제 19편	
52	策	1852(철종 3) 4월 式年文科 覆試 / 執策 1제 1편	
53	表	1852(철종 3) 4월 式年文科 覆試~동년 7월 親臨春塘臺文臣 製述 / 表 3제 3편	
54	義	1852(철종 3) 4월 式年監試 覆試~1855(철종 6) 2월 式年監試 覆試 / 詩義 2제 2편, 書義 1제 1편, 禮義 1제 1편 / 총 4제 4편	
55	銘	1852(철종 3) 1월 翰林 召試~동년 3월 親臨 應製 / 銘 2제 5편	
56	詩	1852(철종 3) 2월 式年監試 覆試~동년 12월 開城府 公都會 / 詩 40제 40편	
57	策	1854(철종 5) 式年文科 初試~1855(철종 6) 式年文科 初試 / 執策 9제 9편	
58	表/箋/銘/詩/論	1854(철종 5) 9월 式年文科 初試 1所~동년 12월 檢書官 取才 / 表 22제 24편, 箋 1제 1편, 銘 5제 10편, 詩 2제 3수, 論 4제 7편 / 총 34제 45편	
59	策/論/表/銘/詩	1858(철종 9) 8월 式年文科 初試~1857(철종 8) 윤5월 檢書官 取才 / 執策 8제 8편, 論 2제 2편, 表 13제 13편, 銘 2제 5편, 詩 1제 2수 / 총 26제 30편	
60	義/策/疑	1858(철종 9) 8월 式年監試 初試~동년 9월 式年監試 覆試 / 詩義 5제 5편, 書義 6제 6편, 禮義 3제 3편, 易義 2제 2편, 策 1제 1편, 疑 17제 17편 / 총 34제 34편	
61	義/疑	1859(철종 10) 1월 增廣監試 初試~동년 2월 增廣監試 覆試 / 詩義 4제 4편, 書義 3제 3편, 禮義 6제 6편, 易義 4제 5편, 疑 17제 22편 / 총 34제 39편	

62	策	1859(철종 10) 9월 秋到記 및 文臣 親試~? / 殿策 2제 3편	
63	詩	1861(철종 12) 2월 式年監試 初試~동년 12월 學製 / 詩 63제 66수	
64	論/奏/啓 /說/序/ 綸音	1801(순조 1) 3월 全羅右道 增廣文科 初試~1822(순조 22) 3월 式年文科 初試 / 論 57제 58편, 奏 1제 4편, 啓 2제 9편, 說 3제 5편, 序 2제 2편, 綸音 1제 2편 / 총 66제 80편	
65	賦	1802(순조 2) 2월 春到記~동년 11월 西學 學製 / 賦 61제 66편	
66	疑/義	1803(순조 3) 增廣監試 初試~1805(순조 5) 增廣監試 覆試 / 疑 52제 52편, 書義 1제 1편 / 총 53제 53편	
67	表/銘/詩	1864(고종 1) 8월 增廣文科 初試~동년 10월 春塘臺試 殿試 / 表 11제 11편, 銘 2제 6편, 詩 1제 1수 / 총 14제 18편	
68	策	1865(고종 2) 2월 式年文科 初試 / 執策 11제 10편	
69	詩	1866(고종 3) 3월 三日製~동년 10월 陞補試 四抄 / 詩 39제 39수	
70	詩	1867(고종 4) 1월 廣州府 公都會~1868(고종 5) 11월 陞補試 十二抄 / 詩 81제 90수	
71	論/義/疑 /策	1869(고종 6) 9월 式年監試 初試 / 論 2제 2편, 詩義 5제 6편, 書義 4제 5편, 禮義 4제 4편, 易義 1제 1편, 疑 22제 26편, 執策 7제 7편 / 총 45제 51편	
72	賦	1870(고종 7) 1월 人日製~동년 11월 咸鏡道 公都會 / 賦 37제 39편	
73	缺		
74	疑/義	1874(고종 11) 3월 增廣別試 監試 初試 / 疑 14제 17편, 詩義 3제 3편, 易義 1제 2편, 禮義 6제 6편, 書義 6제 8편 / 계 30제 36편	
계 2576제 3,410편			

현전하는 74책만으로도 『임헌공령』은 거질의 책이라고 할 만하지만 이외에도 낙질이 상당하리라 추정된다. 1책과 2책 사이에도 5년의 기간이 비어 있으며, 18책 이후로는 갑작스럽게 순조 11년 이후의 자료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책과 19책 사이에도 15년의 공백이 있다. 뿐

만 아니라 대체로 시대순으로 자료가 배열되어 나아가다가 64, 65, 66책은 갑작스럽게 순조 연간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점도 의문스럽다. 결국 자료의 散逸뿐만 아니라 편차 상에서도 이 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록된 작품의 수량과 관련해, 정조는 당초 『군서표기』에 『임헌공령』에 대한 해제를 쓰면서 “병신년부터 경신년까지 156권”이라고 하였으므로 정조대 자료만 해도 이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전 규장각본은 정조대의 것이 18책에 불과하여 11%의 자료만이 남아 있다. 또한 정조 연간의 자료들은 목차가 만들어져 있는 등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체제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책당 실려 있는 작품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있어서, 후대로 갈수록 『임헌공령』의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⁰⁾

한편 『임헌공령』은 규장각 소장본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4권본(古貴3647-5)과 24권본(한古鮮26-22)이 소장되어 있는데, 전자는 순조 연간, 후자는 정조 연간의 자료가 실려 있는 것들이다. 이들의 내용은 규장각본과 중복되지 않아서, 당초 편찬했던 『임헌공령』이 모종의 이유로 흩어져 오늘날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책수	문제	내용	비고
1	策	1831년(순조 31) 3월 東堂初試~동년 4월 20일 式年文科 東堂試會試	執策
2	義	1806년(순조 6) 8월 式年監試 初試~1811년(순조 11) 6월 6일 居館儒生 應製	

20) 『일성록』을 살펴 보면 정조 연간에는 특정 시험이 시행된 후에 해당 시험의 답안을 『임헌공령』에 베껴 넣으라는 지시를 종종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3	策	1805년(순조 5) 9월 增廣文科 初試~동년 10월 24일 增廣文科 覆試	執策
4	疑	1813년(순조 13) 8월 江原道 橫城縣 都會~1822년(순조 22) 閏3월 式年監試 覆試	

책수	문제	내용	비고
1	詩	1777년(정조 1) 2월 增廣監試 初試~1783년(정조 7) 增廣監試 初試	
2	詩	1787년(정조 11) 2월 抄啓文臣 課試~1789년(정조 13) 5월 抄啓文臣 去四月朔課試 追試	
3	詩	1789년(정조 13) 5월 陞補三抄~1790년(정조 14) 6월 抄啓文臣 親試比較	
4	賦	1782년(정조 6) 4월 東學製~1783년(정조 7) 11월 抄啓文臣 親試比較	
5	賦	1788년(정조 12) 9월 忠淸左道 監試~1789년(정조 13) 5월 抄啓文臣 親試 추시	
6	賦	1795년(정조 19) 6월 日次儒生進箋 儒生應製~동년 12월 全羅道 公都會 覆試	
7	賦	1794(정조 18) 水原儒生 應製~동년 9월 南學製	
8	賦	1794(정조 18) 7월 水原邑內儒製~동년 10월 抄啓文臣 親試	
9	銘/頌	1776년(정조 즉위) 庭試 殿試~1785년(정조 9) 謁聖試	
10	策	1790년(정조 14) 12월 抄啓文臣 課試	殿策
11	策	1776년(정조 즉위) 8월 추도기 製述~1777년(정조 1) 4월 增廣文科 殿試	殿策
12	策	1790년(정조 14) 2월 人日製~동년 2월 抄啓文臣 親試	殿策
13	策	1793년(정조 17) 4월 江原道 功令生 試取~1794년(정조 18) 2월 春到記	殿策
14	策	1784년(정조 8) 6월 抄啓文臣 親試更試~1786년(정조 9) 1월 人日製	殿策
15	策	1777년(정조 1) 10월 討逆科 殿試~1778년(정조 2) 8월 庭試 殿試	殿策
16	策	1793년(정조 17) 4월 濟州儒生 應製~1794년(정조 18) 8월 抄啓文臣 親試	殿策
17	策	1787년(정조 11) 3월 文臣 應製 및 三日製	殿策
18	策	1789년(정조 13) 閏3월 抄啓文臣 親試	殿策

19	策	1789년(정조 13) 11월 閣臣承旨 應製	殿策
20	策	1797년(정조 21) 1월 3일 人日製~1798년(정조 22) 6월 湖南儒生 應製	殿策
21	策	1791년(정조 15) 12월 抄啓文臣 親試~1792년(정조 16) 1월 人日製	殿策
22	策	1792년(정조 16) 7월 七夕製~동년 7월 抄啓文臣 親試 二次更試	殿策
23	策	1783년(정조 7) 3월 增廣文科 初試~동년 4월 增廣文科 覆試	執策
24	策	1783년(정조 7) 9월 式年東堂 初試~1785년(정조 9) 9월 原春道 東堂初試	執策

다음으로, 규장각 소장본 『임헌공령』 수록 작품들을 문체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詩	賦	表	箋	策	義	疑	詔	綸音	敎	箴	銘	頌
1027	795	307	82	138	150	152	11	2	15	4	166	66
贊	碑	書	通文	判	奏	啓	啓目	論	說	序	疏	草記
20	2	1	1	2	4	9	2	123	5	9	2	5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科文六體라고 불리는 주요 문체들(위 도표에서 굵은 글자로 표시) 외에도 과거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는 다양한 문체들이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도표에서 눈에 띄는 점이라면 주요 문체들 이외의 기타 문체 중에서는 論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 그리고 실용성이 높은 문체인 啓, 啓目, 疏, 草記 등의 문체도 과시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15책에는 1795년(정조 19)과 1798년(정조 22)에 抄啓文臣들을 대상으로 부과된 과시의 문제 및 문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명	문제	제목	작자	성적
1795(정조 19)년 12월 抄啓文臣 課試 ²¹⁾	書	擬與抄啓諸僚論朱書百選	洪奭周	三中
	通文	代方外儒生通館學事係斯文外愼 勿封章以貽侵官之譏	金近淳	三下(居首)
	判	擬耕牛車牛泥牛等乞禁歲肉事狀	趙萬元	三下 ²²⁾ (居首)
1798(정조 22) 8월 課試 ²³⁾	啓目	擬戶曹年分啓目	洪奭周	三中一(居首)
			金啓溫	三中

이러한 문제들은 초계문신들의 실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된 것들로 생각된다. 수록 작품들은 대부분 해당 시험에서 우등을 한 답안들을 가려 수록하였는데, 이 답안 자료들은 개인 문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일 뿐만 아니라 초계문신의 작품을 모아놓은 『규화명선』이나 『정시문정』 등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료들이어서 연구 가치가 높다. 특히 계목의 경우 홍석주와 김계온의 답안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왜 홍석주의 답안이 김계온의 답안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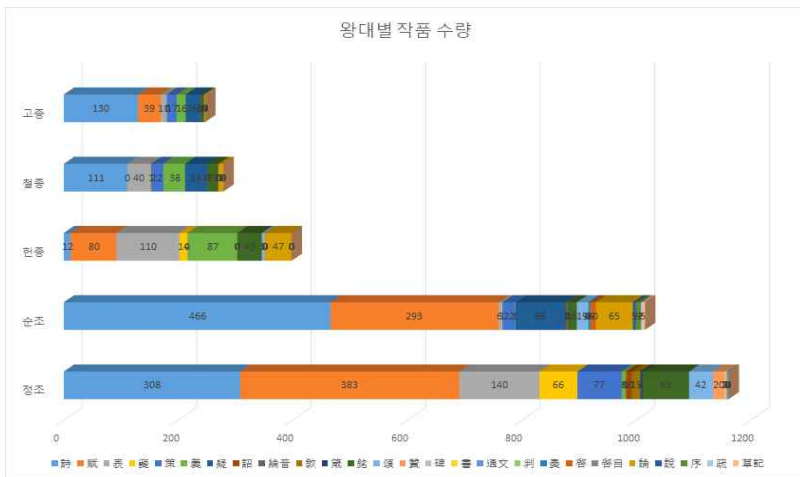
다음의 그래프는 왕대별로 작품 수량을 다시 정리해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 보면 역시 『임헌공령』의 제작을 발의하여 주도했던 정조 시대의 작품이 가장 수량이 많고, 이후 후대로 갈수록 작품의 양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조 사후 이 책의 편찬 동력이 상실되어 증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편찬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조 자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조 연간의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될

21) 표제 아래에는 “乙卯十一月 抄啓文臣去年三月朔課試, 再次比較”라고 주석되어 있어서 한 해 전인 갑인년(1794) 3월에 치러졌던 시험을 겹쳐야 할 시험을 다시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성록』 정조 19년 11월 26일 기사 참조.

22) 『일성록』에는 성적이 三下一로 나와 있음.

23) 역시 전 해(1797)에 7월에 치렀어야 할 과시를 이때 다시 보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뒤를 이은 임금들은 아무래도 정조만큼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²⁴⁾ 뿐만 아니라 정조가 이 책의 증보를 맡겼던 內閣, 즉 규장각 역시 정조대만큼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리라 추정된다.



IV. 『臨軒功令』의 의의

1. 국가 주도의 과거 문제 및 답안 자료 수집

무엇보다 『임헌공령』은 임금이 주도하여 과거 문제와 답안 자료를 모은 선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내내 과거를 시행해 오면서 과거시험 대비를 위한 수많은 과문선집과 각종 참고서들이

24) 『임헌공령』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횟수로 보아도 정조대를 제외하면 이후로는 순조대에 한두 차례 언급되는 것이 전부이다. 『승정원일기』의 경우, 정조대에는 총 10회 언급되는 반면, 정조 이후로는 순조대에만 2회 언급에 그치고 있다. 『내각일력』에서는 정조대 13회, 순조대 1회 언급되었다. 헌종, 철종, 고종 연간에는 이 책이 전혀 거론된 바 없다.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문선집들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보니 체계를 갖추지도 못하고 필사 상태도 나쁜 것들이 많을 뿐더러, 과문을 이해하는 데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시험 관련 정보도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문선집 자료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문헌학적 고찰 및 신뢰도 검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헌공령』은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임금이 직접 지시하여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과문선집류 저술보다 신빙성을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 작품마다 시험 관련 정보, 응시자 관련 정보를 적시해 놓고 있음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거니와, 이들 정보를 현전하는 방목 및 『승정원일기』, 『일성록』, 『내각일력』 등 여타의 역사 자료들과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기록의 사실성을 교차 검증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록된 답안들은 해당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답안만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고, 일부 답안의 경우에는 批點이 찍혀 있기도 하여 답안의 내용 자체를 연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다양한 과거 시험 문제 및 답안 자료의 보존

『임헌공령』에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과시 문제 및 답안 자료가 매우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과거 시험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참조하는 자료는 각 시험 때마다 합격자 명단을 비롯한 시험 관련 정보를 정리해 간행하는 司馬榜目 및 文科榜目인데, 단회 방목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많을 뿐더러, 『國朝文科榜目』 등의 종합 방목의 경우에는 殿試의 시험 문제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임헌공령』에는 초시의 시험 문제를 지역별로 모두 수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1책에 수록된 策은 1777년(정조 1)에 치러진 增廣試 初試의 終場으로 치러진 책문의 문제와 답안을 실고 있는데, 한성에서 치러진 초시 문제 및 답안 두 편

을 비롯하여 지역별 문제와 답안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험장소	문체	문제	답안 작성자	성적	비고
漢城 1所	策	則	鄭斗榮	三下	
漢城 2所	策	試士	吳翼煥	三中	최종 급제(병과 1인)
慶尙左道	策	名	金熙稷	三中	최종 급제(병과 3인)
慶尙右道	策	損益	李萬運	三中	최종 급제(을과 3인)
全羅左道	策	鳶魚	黃珪	三中	
全羅右道	策	夢	李徹鑑	三下	
忠清左道	策	文獻	李基崇	三下	
忠清右道	策	論語	李敏采	三中	최종 급제(을과 1인)
平安南道	策	鳳	洪秋鏡	三中	

통상 문과 단회방목에는 초시 문제를 잘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²⁵⁾ 수록하더라도 지역별 초시 문제까지 수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京試를 제외한 鄉試의 시험 문제는 개별 과문선집을 뒤지거나 개인 문집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임헌공령』은 각 지역별 향시의 문제와 우수 답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수록해 놓고 있어서 과시 자료의 외연을 크게 확대해 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헌공령』이 모든 과거 시험의 자료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 문제 및 답안 자료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 책과 더불어 그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과문선집 자료 등의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핀 1777년 증광시 자료와 관련하여 숙종대부터 정조대까지의 과문 자료를 모은 『科儷』²⁶⁾은 숙종부터 정조 연간까지의

25) 증광시 방목의 경우는 비교적 문제를 소상히 수록하지만 식년시 방목은 초시 문제를 잘 수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26-15). 필사본 9권 9책.

다양한 과거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수록하였는데, 이 책에는 바로 이 시험의 초시 中場으로 출제된 表 문제가 역시 지역별로 모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임헌공령』을 다른 여러 과문선집들과의 상호 참조하여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특정 시험의 모든 문제 및 답안 자료를 온전하게 재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시험 문제 및 답안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또다른 사례로 公都會 자료를 언급할 수 있다. 공도회는 지역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중앙의 역사 기록에는 시행 사실조차도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공도회도 방목이 별도로 작성되기는 하나 여기에는 합격자 명단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공도회 답안을 모은 ‘公都會 科作’ 서적이 일부 현전하지만²⁷⁾ 현전 자료들은 모두 순조 연간의 것들이어서 정조 연간의 공도회 문제 및 답안 자료를 모은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임헌공령』에는 정조 연간의 공도회 문제와 더불어 우등 답안까지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정조 연간 및 그 이후의 공도회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책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1783년(정조 7) 12월에 지역별로 시행되었던 공도회의 문제 및 답안, 우등자와 성적 자료가 빠짐없이 실려 있다.

당시 공도회 시행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문제	출전	우등자	성적
開城府	治裘		金鼎漢	三上
江華府	意者中國有聖人	尙書大傳	閔?	三中

27) 규장각에 소장된 다음 자료들이 거의 전부이다. 『廣州府公都會科作』(규11434-1) ; 『水原府公都會初場科作』(규11434-2) ; 『晉州公都會科作』(규3253) ; 『忠清左道燕岐都會監試科作』(규9853) ; 『平壤都會科作』(규9854-1) 등. 다만 이들은 모두 순조 연간의 것들이고 정조 연간의 자료를 모은 작품집은 현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洪忠道 (忠淸道)	讀其書如聞湘靈鼓瑟	(楚辭 遠遊	俞漢綺	三上
黃海道	鍾鼓既設一朝饗之	詩經 小雅 彤弓	宋喆命	三中
全羅道	陳平亦知學	二程遺書 卷17	金達生	三上
濟州道	唐民有堯風	詩經 國風 唐風	洪達勛	三中
平安道	初行養老禮	後漢書 卷2 顯宗孝明帝紀	張致說	三中
	七德	舊唐書 卷28 音樂志	盧尙愼	三下
慶尙道	能以美利利天下不言 所利大矣哉	周易 乾卦 文言傳	成東直	三中
	下愚不能無道心	書經集傳	禹秉簡	三下
咸鏡道	議賑	漢書 卷4 文帝本紀	金彦璣	6次上

여기에 이름과 작품을 올린 인물들이 해당 시험에서의 수석 합격자인지는 상호 검증이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헌공령』의 기록 사례를 두루 살폈을 때 적어도 해당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었던 답안을 가장 먼저 수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기 인물들이 해당 시험의 최우등을 차지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성적이 삼상 내지는 삼중이어서 성적 상으로 보아도 최우등이거나 그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임헌공령』에는 다른 과문선집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시험 문제 및 답안이 수록되어 있어서 향후 과거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논문은 규장각 소장본 『임헌공령』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 『임헌공령』의 편찬 의도와 체재, 내용과 가치 등 이 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문장은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시대에 출제되었던 과거 문제와 답안 자료를 집대성한 자료집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 시대를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임헌공령』은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치러졌던 다양한 考試들, 대소과 과거를 비롯하여 문신 課製, 지역별 公都會 등 다양한 시험의 문제와 답안 자료를 담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 그 체제와 내용 및 그 특징적 면모 등을 초보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이 책은 특히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각종 시험 관련 기록들이 상세하고, 문제와 답안 역시 누락 없이 전문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향후 『임헌공령』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과거 문제 및 답안에 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거나, 작품 내지는 작품군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통해 다채로운 시대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후속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과거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조선 시대의 학술 및 사상, 문화를 새로이 규명하는 작업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 논문접수일: 20.08.31 / 심사완료일: 20.09.15 / 게재확정일: 20.09.29.

<참고문헌>

- 正祖 命撰,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1430)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貴3647-5 ; 한古鮮26-22).
- 正祖 命撰, 『臨軒題叢』,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1430).
-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267, <http://db.itkc.or.kr/>
- 『內閣日曆』, 규장각 소장본, <http://kyu.snu.ac.kr/>
- 『常目總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122-2), <http://www.nl.go.kr/>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http://db.itkc.or.kr/>
- 柳宗元, 『柳河東集』, 文淵閣 四庫全書本.
-
- 박선이, 『『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 연구』 80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8, 47-73면.
- 박제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호, 진단학회, 2016.
- 윤선영, 「正祖代 四書疑 試題 小考」, 『태동고전연구』 37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6.
- 윤선영, 「순조~철종대 科擧 四書疑 시제 출제경향 연구」, 『규장각』 5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사서의 試文 일고」, 『한문학논집』 50집, 근역한문학회, 2018
- 윤선영,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Abstract

The Philological Study on *Imheongongnyeong*(臨軒功令) / Kim, Kwangnyeon

This paper analyzed its structure, contents, and features on a basic level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f *Imheongongnyeong*(臨軒功令), compiled from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King Jeongjo was interested in the Gwageo(科擧, state examination) and tried to reform it from the time he ascended to the throne, and thought that questions and answers from Gwageo showed the times. So, he compiled *Imheongongnyeong* by collecting various questions and answers to Gwageo. This book continued to be added after King Jeongjo's reign and continued to be compiled until King Gojong's reign.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 material that specifically shows the aspects of the Gwageo after the reign of King Jeongjo.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Imheongongnyeong* on a basic level through the philological review. This book is especially valuable in that it contains detailed test record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materials, and the questions and answers are also full without omission.

In the future, we will be able to use *Imheongongnyeong* in a variety of ways to more actively try to study Gwageo questions and answers.

Key words: King Jeongjo(正祖), *Imheongongnyeong*(臨軒功令), *Sangmok-chongnan*(常目總覽), Gwageo(科擧, the state examin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Gwamun(科文, Answers to state examination), Philology.